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73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임호선·이학영·권칠승

윤호중 • 정준호 • 김승원

윤준병 • 주철현 • 이병진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하며,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음.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5 6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규정을 두고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있고, 특히, 음주운전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단속횟수가 많을 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자동차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의2 중 "25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한다.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로 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혀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56조제11호 및 제12호 중 "자전거등을"을 각각 "자전거를"로 한다. 제16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전에 따른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	19의2
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u>25킬로미터</u> 이상으로	<u>20</u> 킬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미터
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 33. (생 략)	20. ~ 33.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6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른 사람
	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이하 "개인
	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
	다)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
	장치를 대여할 때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u>제56조의2</u>(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자의 준수사항 등) (생 략)

<u>제56조의3(</u>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생략)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저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 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	<u> </u>
<u>경찰청장으로부터</u>	운전민	변혀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및	<u>변허의</u>
효력이 정지된 경	우에는	개인
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	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2037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의 준수사항 등) (현행 제56조 의2와 같음)

제56조의4(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현행 제56조의3과 같음)

세148조의2(벌칙) ①
<u>०) ठ</u> ो

- 1.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 10. (생략)
 -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u>자전거등을</u>운전한 사람
 -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 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자전거등</u> 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 다)
 - 13. (생략)
-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1. ~ 10. (현행과 같음)
11
<u>자전거를</u>
12
<u>자전거를</u>
13.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1. ~ 8. (현행과 같음)
9.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이용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
<u>니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u>

 동장치를 대여한 대여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